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29 호

2003 년 7 월 31 일 목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5호(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6호(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7호(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8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10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2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4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20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33호(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고시)----- 3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8호(노인건강진단실시공고)-----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9호(2003년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추천공고)--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70호(아파트공동체문화가꾸기제안공모공고)----- 4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71호(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42
- 대한주택공사논현사업단공고 (토지·물건조사공고[인천논현2택지주변지역도로개설공사])- 44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5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한다.

제2조(위촉)중 “개업중인 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 및 노무사”로 하고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1인의 노무사”로 한다.

제3조(직무)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반 노무관리의 자문
2. 노무 및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법·노사관계 교육 및 지도
4.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제4조(임기)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한다.

제6조(소송비용등)제3항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하며, 동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서식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문노무사 수당 10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노사문제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고문 노무사를 들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노사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문번호사 운영조항에 노무사 운영내용을 추가함(제1조)
- 고문노무사의 위촉 사항(제2조)
- 고문노무사의 역할 정의(제3조제2항)
- 고문노무사에 대한 수당지급(제6조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6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제1항 내지 제3항중 “구청장” 을 “부구청장” 으로 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본문중 “구청장” 을 “부구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반주자 및 단원의 위·해촉 권한을 구청장에서 합창단장인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남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해촉 권한 조정
(제6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및 종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키는 경우에는 구의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기타 센터의 조직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 2.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원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3.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등을 받은 경우

제8조(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대하여 년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주간)①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일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등)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하여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지급)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도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자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 지역단위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서의 제출과 관련서류 보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
-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력인정 권장과 포상·보험 가입·실비지원 등을 규정(제11조, 제12조, 제1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0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의제21” 이라 함은 남동구의 주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작성하는 분야별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 함은 모든 개발은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다음세대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협의회는 제1조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남동구의제21의 작성과 시범실천운동
2. 남동구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3. 남동구의제21에 관한 교육, 홍보, 주민참여행사 전개

4. 기타 협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의제21추진기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유지함은 물론,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협의회는 구민, 기업, 행정의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의장단 : 구민과 기업을 대표하여 선출한 2인 및 남동구 부구청장
2. 당연직위원 : 구 사회경제국장, 관련분야 실·과장과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3. 위촉직위원 : 주민·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남동의제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자로서 공동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기구)협의회는 그 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또한, 필요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 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총회)①총회는 공동의장단을 비롯한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에서는 남동의제21 작성과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결하며 의제작성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③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을 총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

연직위원으로 구의 사회경제국장과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포함하며 여성위원을 30%내외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남동의제21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소요예산을 포함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제9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구성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의장이 위촉한다. 관련 분야별로 참여하는 구의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작성·실천하고자 하는 남동의제21에 따라 전문분야별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남동의제21의 작성과 시범사업 및 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제10조(의결)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지원등)①구청장은 남동의제21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남동의제21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소요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협의회 출범 이전에 남동의제21추진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 *****
- 제정이유
- 199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와 Rio선언 및 환경개발회의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지구상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됨에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남동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실천계획과 활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범시민운동이 필요
- 주요골자
- 남동의제21 추진협회의회의 목적과 사업수행 내용을 정하고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협조 체제를 마련(제1조 내지 제3조)
 - 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기구와 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규정(제4조 내지 제10조)
 -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 및 남동의제21추진협회의회의 구체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제11조 내지 제13조)
- *****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9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직 6급 기준비를 확대·조정에 따라 업무이양, 신규업무 발생 등 업무증가 부서에 팀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며
- 정원확보대상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근인력을 해소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최상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조 관련 기관별·직급별 정원중 총계 “총계”란 「668」을 「681」로 하고, 총계 “본청”란 「405」를 「411」로 하며 총계 “직속기관”란 「31」을 「38」로 한다.
- 제2조 관련 기관별·직급별 정원중 6급소계 “총계”란 「84」를 「92」로 하고, 6급소계 “본청”란 「61」을 「66」으로 하며 6급 소계 “동”란 「15」를 「17」로 한다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681	411	18	38	17	19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88	359	10	35	15	169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38	15	2	3	1	17
행정	22	9	2		1	10
의무	3			3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92	66	3	4	2	17
행정	56	35	3		1	17
세무	1	1				
임업	1	1				
보건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2	2				
통신	1	1				
행정·세무	6	5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기계	1	1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임업·토목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개	176	122	4	7	4	39
행정	102	61	4		2	35
세무	9	9				
사회복지	6	2				4
전산	3	3				
기계	2	2				
전기	3	3				
화공	1	1				
농업	1	1				
임업	2	2				
수산	1	1				
보건	3	2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4	4				
토목	15	14			1	
건축	11	10			1	
지적	4	4				
화공·환경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축산·수의	1	1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8급 소계	181	116		12	7	46
행정	85	45		1	4	35
세무	27	27				
사회복지	13	2				11
전산	2	2				
기계	2	1			1	
전기	1	1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2	2				
축산	1	1				
수산	1	1				
보건	8	3		5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5	4			1	
토목	11	11				
건축	8	7			1	
지적	5	5				
보건·환경	1	1				
9급 소계	95	36		8	1	50
행정	51	21			1	29
세무	1	1				
사회복지	24	3				21
전산	2	2				
임업	2	2				
보건	4	1		3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토목	3	3				
보건·환경	2	2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수행비서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기능직 계		85	44	8	3	2	28
7급 소계		5	4				1
전기		1	1				
기계		2	2				
운전		1	1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4	4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3	3				
9급 소계		27	19	4	1		3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10	5	1	1		3
사무보조(필기)		2	1	1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10	9	1			
조무(주차단속)		1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10급 소계		41	11	2	2	2	24
교환		1	1				
기계		1	1				
운전		18		1	1	2	14
전산		1	1				
조무(조무)		17	5	1	1		10
조무(주차단속)		1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2	2				
고용직 계		6	6				
1종 소계		6	6				
지도원		6	6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31.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과 【별표3】 및 【별표5】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직 6급 기준비율 확대·조정에 따라 업무이양, 신규업무 발생 등 업무증가 부서에 팀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며
- 정원확보대상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근인력을 해소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최상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2조 관련

[별표1]의 세무과 일반직 6급 “직급별 내역”란중 「행정·세무6」을 「세무1, 행정·세무5」로 하며

[별표3]의 보건소 계 「31」을 「38」로 하고, 일반직 6급 “정원” 「3」을 「4」로, “직급별 내역”란중 「의료기술·간호1」을 삽입한다.

【별표 1】 구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411	
기 획	계		29	
감사실	일반직	소계	2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행정·전산1
		7급	13	행정9, 전산3, 토목1
		8급	7	행정5, 전산2
		9급	2	전산2
	기능직	소계	1	
		9급	1	조무(사서)1
문 화	계		20	
홍보실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5	행정5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2	
		8급	1	기계1
		10급	1	조무(조무)1
총무과	계		29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3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통신1
		7급	6	행정5,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8급	5	행정5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별정직	9급	4	행정4
		소계	1	
		7급	1	일반비서1
	기능직	소계	4	
		8급	1	조무(조무)1
		9급	1	교환1
		10급	2	조무(조무)1, 교환1
자 치 행정과	계		29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5, 전기1
		8급	6	행정6
		9급	3	행정3
	기능직	소계	9	
		7급	2	기계1, 운전1
		8급	3	운전3
		9급	4	조무(조무)2, 운전2
세무과	계		48	
	일반직	소계	44	
		5급	1	행정1
		6급	6	세무1, 행정·세무5
		7급	9	세무9
		8급	27	세무27
		9급	1	세무1
	기능직	소계	4	
		9급	3	조무(조무)2, 사무보조(필기)1
		10급	1	전산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민 원 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지적1
		6급	4	행정2, 지적2
		7급	10	행정6, 지적4
		8급	12	행정6, 토목1, 지적5
		9급	4	행정4
	기능직	소계	1	
		9급	1	조무(조무)1
사 회 복지과	계		22	
	일반직	소계	21	
		4급	1	행정·임업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급	7	행정5, 사회복지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5	행정2, 사회복지3
	기능직	소계	1	
		10급	1	조무(조무)·사무보조(워드)1
청소과	계		24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7	행정6, 환경1
		8급	5	행정2, 환경3
		9급	1	환경1
	기능직	소계	7	
		8급	2	운전1, 조무(조무)1
		9급	4	운전3, 조무(조무)1
		10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환경 위생과	계		25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5	행정1, 보건1, 행정·보건2, 행정·환경·화공1
		7급	7	행정1, 환경3, 보건2, 화공·환경1
		8급	7	행정1, 보건3, 화공1, 환경1, 보건·환경1
		9급	4	행정1, 보건1, 보건·환경2
	기능직	소계	1	
		9급	1	조무(조무)1
지역 경제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농업1, 행정·화공1
		7급	9	행정2, 농업1, 화공1, 기계2, 수산1, 전기1, 축산·수의1
		8급	6	행정2, 화공1, 농업1, 수산1, 축산1
		9급	2	행정2
도시 계획과	계		24	
	일반직	소계	21	
		4급	1	시설1
		5급	1	행정·토목1
		6급	4	행정1, 토목1, 토목·건축2
		7급	9	행정3, 토목5, 건축1
		8급	6	행정1, 토목4, 건축1
	고용직	소계	3	
		1종	3	고용1종3
도시 정비과	계		24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토목·임업1
		6급	4	행정2, 임업1, 토목·임업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7급	8	행정3, 토목2, 건축1, 임업2
		8급	4	행정1, 토목1, 임업2
		9급	3	토목1, 임업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조무(조무)1
	고용직	소계	3	
		1종	3	고용1종3
건설과	계		28	
	일반직	소계	22	
		5급	1	토목1
		6급	4	행정1, 토목2, 행정·토목·건축1
		7급	9	행정1, 토목6, 전기1, 건축1
		8급	7	행정2, 토목4, 기계1
		9급	1	토목1
	기능직	소계	6	
		7급	2	전기1, 기계1
		8급	2	전기1, 기계1
		10급	2	기계1, 조무(조무)1
건축과	계		27	
	일반직	소계	24	
		5급	1	건축1
		6급	5	행정1, 건축3, 토목·건축1
		7급	8	행정1, 건축7
		8급	8	행정1, 건축6, 전기1
		9급	2	행정1, 토목1
	기능직	소계	3	
		8급	1	조무(조무)1
		9급	2	건축1, 조무(조무)1
교통과	계		28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행정·기계1
		7급	8	행정8
		8급	8	행정7, 토목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4	
		9급	2	조무(조무)1, 조무(주차단속)1
		10급	2	조무(주차단속)1, 조무(조무)·사무보조(워드)1

【별표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8	
보건소	계		38	
	일반직	소계	35	
		4급	1	보건·의무1
		5급	3	의무3
		6급	4	의료기술·간호1, 행정·보건·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7	보건1, 의료기술1, 간호4, 보건·약무1
		8급	12	행정1, 보건5, 의료기술2, 간호4
		9급	8	보건3, 의료기술5
	기능직	소계	3	
		9급	1	운전1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

【별표5】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97	
구월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보건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구월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구월3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구월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간석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간석2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전산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2	행정2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간석3동	계		14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환경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4	행정3,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간석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만수1동	계		13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만수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전산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1	조무(조무)1
		10급	1	운전1
만수3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만수4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1	행정1
		9급	4	행정3,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만수5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만수6동	계		13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기능직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4	행정3, 사회복지1
		소계	1	
		9급	1	운전1
장 수 서창동	계		9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지적·토목·임업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9급	1	운전1
		10급	1	조무(조무)1
남 촌 도림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토목·임업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소계	1	
		9급	1	운전1
논 현 고잔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화공·기계·환경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별표2】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계			18	
의 회 사무국	계		18	
	일반직	소계	10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3	행정3
		7급	4	행정4
	기능직	소계	8	
		8급	2	기계1, 사무보조(필기)1
		9급	4	운전1, 조무(조무)1, 사무보조(필기)1 조무(조무)·사무보조(워드)1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33호

2003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19일 제115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3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60,541,314	146,083,693	14,457,621	9.8	
일 반 회 계	135,400,325	123,643,070	11,757,255	9.5	
특 별 회 계	25,140,989	22,440,623	2,700,366	12.0	
의료급여기금	99,949	56,800	43,149	75.9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896,777	1,840,585	56,192	3.0	
주 차 장	7,565,444	5,134,395	2,431,049	47.3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000,000	2,000,000	0	0.0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400,000	7,400,000	0	0.0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778,819	2,608,843	169,976	6.5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400,000	3,400,000	0	0.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35,400,325	100	123,643,070	100	11,757,255	9.6
세입	지방세수입	21,813,673	16.1	20,164,053	16.3	1,649,620	8.2
	세외수입	43,741,764	32.3	33,799,725	27.3	9,942,039	29.5
	경상적세외수입	16,835,928	12.4	15,709,218	12.7	1,126,710	7.2
	임시적세외수입	26,905,836	19.9	18,090,507	14.6	8,815,329	48.8
	지방교부세	437,000	0.3	0	0.0	437,000	1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40,394,288	29.8	40,048,288	32.4	346,000	0.9
	보조금	29,013,600	21.4	29,631,004	24.0	△617,404	△2.0
	국고보조금	19,944,423	14.7	20,438,187	16.5	△493,764	△2.4
	시·도비보조금	9,069,177	6.7	9,192,817	7.4	△123,640	△1.3
세출	경상예산	50,146,641	37.0	47,901,575	38.7	2,245,066	4.7
	인건비	25,785,197	19.0	24,780,281	20.0	1,004,916	4.1
	경상적경비	24,361,444	18.0	23,121,294	18.7	1,240,150	5.4
	사업예산	72,218,553	53.3	66,713,125	54.0	5,505,428	8.3
	보조사업	36,232,078	26.8	36,985,460	29.9	△753,382	△2.0
	자체사업	35,986,475	26.6	28,727,665	24.0	6,258,810	21.1
	채무상환	443,118	0.3	443,118	0.4	0	0.0
	지방채상환	443,118	0.3	443,118	0.4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12,592,013	9.3	8,585,252	6.9	4,006,761	46.7
	예비비	3,360,511	2.5	2,093,750	1.7	1,266,761	60.6
	기타	9,231,502	6.8	6,491,502	5.3	2,740,000	42.3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35,400,325	100	123,643,070	100	11,757,255	9.6
성 질 별	인 건 비	25,785,197	19.0	24,780,281	20.0	1,004,916	4.0
	물 건 비	18,494,973	13.6	17,319,375	14.0	1,175,598	6.8
	이 전 경 비	48,277,328	35.6	45,627,137	36.9	2,650,191	5.8
	자 본 지 출	33,127,052	24.4	28,307,263	22.9	4,819,789	17.0
	용 자 및 출 자	0	0.0	0	0.0	0	0.0
	보 전 재 원	404,800	0.3	404,800	0.3	0	0.0
	내 부 거 래	3,310,464	2.4	3,010,464	2.4	300,000	9.9
	예비비 및 기타	6,000,511	4.4	4,193,750	3.4	1,806,761	43.0
기 능 별	일 반 행 정	42,024,530	31.0	38,871,352	31.4	3,153,178	8.2
	사 회 개 발	71,685,963	52.9	68,210,942	55.2	3,475,021	5.1
	경 제 개 발	12,381,363	9.1	9,658,472	7.8	2,216	0.4
	민 방 위 비	414,840	0.3	415,436	0.3	△596	△0.2
	지원및기타경비	8,893,629	6.6	6,486,868	5.2	2,406,761	37.2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5,140,989	100	22,440,623	100	2,700,366	12.1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0,919,994	83.2	19,924,928	88.8	995,066	5.0
	경상적세외수입	6,761,888	26.9	8,451,363	37.7	△1,689,475	△19.9
	임시적세외수입	14,158,106	56.3	11,473,565	51.1	2,684,541	23.4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4,220,995	16.8	2,515,695	11.2	1,705,300	67.8
	국고보조금	0	0.0	0	0.0	0	0.0
	시.도비보조금	4,220,995	16.8	2,515,695	11.2	1,705,300	67.8
	경상예산	540,019	2.1	495,467	2.2	44,552	9.0
	인건비	69,627	0.3	66,916	0.3	2,711	4.1
	경상적경비	470,392	1.9	428,551	1.9	41,841	9.8
	사업예산	18,458,210	73.4	15,444,034	68.8	3,014,176	19.6
세출	보조사업	5,357,797	21.3	155,695	0.7	5,202,102	3341.3
	자체사업	13,100,413	52.1	15,288,339	68.1	△2,187,926	△14.3
	채무상환	2,069,000	8.2	2,069,000	9.2	0	0.0
	지방채상환	2,069,000	8.2	2,069,000	9.2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4,073,760	16.2	4,432,122	19.8	△358,362	△8.0
	예비비	2,111,611	8.4	4,413,122	19.7	△2,301,511	△52.1
	기타	1,962,149	7.8	19,000	0.1	1,943,149	10227.2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5,140,989	100	22,440,623	100	2,700,366	12.1
성 질 별	인 건 비	69,627	0.3	66,916	0.3	2,711	4.0
	물 건 비	339,523	1.3	322,783	1.4	16,740	5.2
	이 전 경 비	316,564	1.2	291,463	1.3	25,101	8.6
	자 본 지 출	16,376,512	65.1	13,418,528	59.8	2,957,984	22.0
	용 자 및 출 자	1,896,003	7.5	1,839,811	8.2	56,192	3.0
	보 전 재 원	2,069,000	8.2	2,069,000	9.2	0	0.0
	내 부 거 래	1,900,000	7.5	0	0.0	1,900,000	100
	예비비 및 기타	2,173,760	8.6	4,432,122	19.7	△2,258,362	△50.9
기 능 별	일 반 행 정	0	0.0	0	0.0	0	0.0
	사 회 개 발	14,153,096	56.3	10,906,904	48.6	3,246,192	29.8
	경 제 개 발	6,745,133	26.8	5,032,597	22.4	1,712,536	34.1
	민 방 위 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4,242,760	16.9	6,501,122	29.0	△2,258,362	△34.8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8호

노인건강진단실시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2003년도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8.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실시기간 : 2003. 9. 5 ~ 2003. 10. 30
2. 장 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34 - 4 위치)
3. 진단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부설 가족보건의원 · 중앙병리검사실)
- 4.검진대상 : 남동구 거주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7명(별첨 참고)
단, 2002년 진단자중 건강자는 제외
5. 접수기간 : 2003. 8. 1~2003. 8. 8 (공휴일 제외)
6. 접 수 처 :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사회복지과(☎453-23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69호

2003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추천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특례보증 추천개요

- 2003년도 특례보증 추천규모 : 10억원
- 특례보증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대출일부터 3년(보증료 연1%)
- 보증(추천)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추천대상

-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업체중 대출신청기간내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
※ 남동구선정 우수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재해업체 등은 선정시 우대

【추천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이내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사실이 있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또는 보증제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 2003. 8. 1 ~ 8. 15 (공휴일은 제외)
 - 2차 : 2003. 11. 6 ~ 11. 20
- 접 수 처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건물, 토지포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류(해당업체), 가점 대상기업은
입증서류 각 1부.
- 경합시 추천순위 : 기업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순으로 결정

☐ 문의 및 상담

-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453-2526, FAX453-2479)
- 남동구 홈페이지 (www.namdong.incheon.kr)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70호

아파트공동체문화가꾸기제안공모공고

아파트 공동체문화 우수 프로그램(아이디어)을 공모합니다.

아파트의 급속한 양적 증가와 함께 삭막하고 단절되어 가는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질적 양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아이디어)을 발굴 및 개발·보급하고자 “아파트 공동체문화 가꾸기 제안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3.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모 명 : 아파트 공동체문화 가꾸기
제안 공모전

2. 공모내용

공동체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가. 생활문화 : 다양한 주민 소모임, 취미·교양
교실, 공동공간 활용 등

나. 공동체육 : 단지별 특색종목 선정 단체 운동
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다. 기타분야 : 반사회 활성화, 농어민 자매결연
직거래, 공동참여의식 제고 등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 등.

3. 응모 자격 : 구민 및 공동체 문화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자격제한 없음)

4. 심사방법

예비심사 후, 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제안설명 및 심의 후 선정

5. 시상내역

- 금 상 : 상금 100만원 및 표창

- 은 상 : 상금 50만원 및 표창

- 동 상 : 상금 30만원 및 표창

- 장려상(2명) : 각 상금 10만원 및 표창

6. 신청서류 : 아파트 공동체문화 가꾸기

프로그램(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또는
서식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아이디어)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 우리구 건축과 및 동사무소 소정양식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 www.namdong.incheon.kr/
실과소/건축과/공지사항 내려받기

※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 첨부 가능

7. 선정발표 : 2003. 9. 25일경(예정) - 개별통보

8. 응모방법

가. 응모기간 : 2003. 8. 1 ~ 8. 30(토)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 동시 응모된 내용은 무효처리됨.

나. 접수처 : 남동구청 건축과 (☎453-2655)

- 우편접수 :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청길5(만수동 1008번지) 건축과

- FAX : (032) 453-2629

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032) 453-265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71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 [별 기]

서 류 명 칭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 고 기 간 : 2003. 7. 30 - 2003. 8. 13(15일간)

송 달 내 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제63조 제3항(과태료)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2003. 8. 13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청소과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 별첨

2003. 7.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1	2003.5.29 13:21	구월동축산물시장 뒤 친변주차장	담배꽂초투기	서울48모7727	김혜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2	2003.5.29. 15:11	구월동축산물시장 뒤 친변주차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2나9833	오세태		인천 남동구 남촌동
3	2003.5.29 19:15	구월동축산물시장 뒤 친변주차장	담배꽂초투기	경기39도4592	장수봉		경기 광명시 하남
4	2003.6.2. 08:15	구월동 편의점앞	전단지 투기	인천30다3280	이승규		인천 연수구 청학동 1
5	2003.6.2 08:42	구월동 편의점앞	전단지 투기	인천32라7354	김경순		인천 남구 주안동 1
6	2003.6.2 18:56	구월동축산물시장 뒤 친변주차장	담배꽂초투기	인천83다8219	김유신		인천광역시 서구
7	2003.6.2. 20:15,20:1	구월동축산물시장 뒤 친변주차장	쓰레기투기	경기51고5413	유재신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30
8	2003.6.2 23:54	구월동 나이트 클럽옆	전단지 투기	서울45구5946	조형욱		서울 강서구 등촌동
9	2003.6.3. 00:51	구월동 나이트 클럽옆	담배꽂초투기	인천31도9169	전현자		인천 남구 관교동 3
10	2003.6.3. 00:57	구월동 나이트 클럽옆	담배꽂초투기	인천31바5204	신진택시 ㈜		인천 서구 가좌동
11	2003.6.3 02:03	구월동 나이트 클럽옆	전단지 투기	경기65두8431	홍경희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12	2003.6.6 10:18	구월동축산물시장	담배꽂초투기	인천70거7115	이영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3	2006.6.10 13:53	하천주차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1두3436	류민혁		인천 남동구 만수동
14	2003.6.10 14:34	하천주차장	담배꽂초투기	인천34나4263	최재림		인천 연수구 선학동
15	2003.6.5 21:32	하천주차장	전단지 투기	인천32라5051	안재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6	2003.6.5 10:48	하천주차장	담배꽂초투기	인천80머8056	김광수		인천 남구 관교동
17	2003.6.10 17:54	하천주차장	휴지투기	인천32다6279	학익침례 교회		인천 남구 학익동

대한주택공사논현사업단공고

토지물건조사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90('03.5.12)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인천 논현2택지 주변지역 도로개설공사(대1-13호선, 대3-21호선, 대3-23호선)사업시행 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7조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하여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대로1-13, 대로3-21, 대로3-23호선)
- 사업의 명칭 : 인천논현2택지 주변지역 도로개설공사
- 사업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사장
- 출 입 기 간 : '03.8.4 ~ '04.8.31(필요시 보상완료일까지)
-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인천논현2택지 주변지역 도로개설공사구역내
- 토지 소유자 : 붙임목록

2003. 7.

대한주택공사논현사업단장

용 지 조 서(대로3-21)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 권 리 관 계	
110	도림동	310-1	전					장금룡	도림동 287-3	남동 농협	만수동 1014-1	근저당권 지상권	
108	도림동	310-3	답					이경화	남구 주암동 605-16	남인천 농협	옥련동 344-1	근저당권	
109	도림동	311-1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93	도림동	311-2	전					최동환	도림동 348				
96	도림동	311-3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94	도림동	311-4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107	도림동	312-1	답					백평금 외2인	도림동 253-10				
105	도림동	312-2	전					조원호	용현동 137-14				
104	도림동	312-3	전					조원호	용현동 137-14				
102	도림동	314-2	전					유강	만수동 5-426 신동아아파트 5-1101	남동 농협	만수동 906	근저당권	
99	도림동	314-3	전					유강	만수동 460-15				
101	도림동	314-4	도					윤정복	도림동 248				
100	도림동	314-5	답					천임상	도림동 290				
103	도림동	314-6	답					천임상	도림동 290				
98	도림동	314-7	답					천임상	도림동 290				
48	도림동	339-1	답					김은배	도림동 248				
46	도림동	339-2	전					김은배	도림동 248-3				
47	도림동	340-1	답					윤덕일	논현동 512				
45	도림동	340-2	도					최재환	경성부 황금정 7장목 13				
44	도림동	340-4	도					최병진	간석동 207-3	오촌자 외2인	종로평창동 350-4	근저당권	
42	도림동	340-5	답					송창희	도림동 290-1				
40	도림동	340-6	답					천영무	주안동 813-19				

용 지 조 서(대로3-21)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 권리 관계	
38	도림동	340-9	전					천영무	주안동 813-19				
39	도림동	341-1	답					천이봉	도림동 289				
67	도림동	341-2	도					이영우 외5인	서울 구로구 개 봉동 155				
41	도림동	341-4	도					천이봉	도림동 289				
43	도림동	341-5	도					천이봉	도림동 289				
37	도림동	341-6	전					천영무	주안동 813-19				
36	도림동	341-9	답					천영무	주안동 813-19				
35	도림동	342	전					최병전	간석동 207-3				
33	도림동	343-1	과					박용현	1038 삼익세라 믹아파트 101- 404				
62	도림동	344-2	도					오옥자 외2인	간석동 344-1 간석주공아파트 63-205				
61	도림동	344-3	도					오옥자 외2인	간석동 344-1 간석주공아파트 63-205				
60	도림동	344-4	도					오연식	고잔동 322	남인천 세무서			압류
31	도림동	344-6	전					정돈시	남구 용현동 491-13	용현3동 새마을 금고	용현동 459- 38	근저당권 지상권	
30	도림동	344-7	전					현상득 외2인	남구 주안동 1469-11				
29	도림동	345-6	전					송순자	도림동 345-1				
66	도림동	347-1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65	도림동	347-2	대					황저규 외1인	연수구 옥련동 641-1 태평아파 트 102-1006	제일 은행	종로 공평동 100	근저당권	
59	삭제 지구외	347-3	도					최상용					미등기
63	도림동	347-4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68	도림동	348-1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71	도림동	348-2 348-7 348-8	대					이전배 외1인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220	남인천 농협	옥련동 344-1	근저당권	

용 지 조 서(대로3-21)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69	도림동	348-3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70	도림동	348-4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추가		348-6												
73	도림동	349-1	전					최동환	도림동 348					
72	도림동	349-2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50	도림동	350-1	답					김해자 외2인	부평구 갈산동 3-7 새한아파트 1-204					
54	도림동	350-2	도					강창규	강서구 화곡동 1030-5					
76	도림동	350-3	도					김정효	도림동 348-5					
74	도림동	350-4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52	도림동	350-5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75	도림동	350-6	도					김정효	도림동 348-5					
51	도림동	351	답					김해자 외2인	부평구 갈산동 3-7 새한아파트 1-204					
53	도림동	352	답					김해자 외2인	부평구 갈산동 3-7 새한아파트 1-204					
49	도림동	353-2	답					이재형	도림동 353	남동 농협	만수동 906	근저당권		
58	도림동	354-1	전					이승덕 외6인	남구 용현동 627-78 한양아 파트 6-803	남동 농협	만수동 906	근저당권		
79	도림동	354-2	도					최재환	경성부 황금정 7정목13					
78	도림동	354-3	답					최수득	장수동 568					
57	도림동	354-4	답					최수득	장수동 568					
77	도림동	354-5	전					이승덕 외6인	중구 내동 14					
56	도림동	354-6	전					이승덕 외6인	중구 내동 14					
55	도림동	354-7	전					이승덕 외6인	중구 내동 14					
84	도림동	355-1	도					최동환	도림동 348					

용 지 조 서(대로3-21)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 권리관계	
82	도림동	355-2	도					최동환	도림동 348				
83	도림동	355-3	대					이승덕 외6인	중구 내동 14				
81	도림동	355-4	도					최갑균	도림동 348				
80	도림동	355-7	대					김건열	연수구 옥련동 643-3 풍림아파 트 102-1006				
113	도림동	358-1	도					최창용	서울 성동구 승 정동 66-84	성동 세우서		압류	
95	도림동	358-10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85	도림동	358-11	대					최정애	도림동 358-11	남동농 협외1인	만수동 1014- 1	근저당권	
91	도림동	358-12	전					채주영 외1인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 트 502-202				
86	도림동	358-14	전					안정자	주안동 1421-6				
89	도림동	358-17	전					하재권	만수동 1014 시 영아파트 102- 607	안산 농협	안산시 성포 동 593-1	근저당권 지상권	
97	도림동	358-18	전					채완수 외1인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 트 502-202				
112	도림동	358-2	전					최문용	경기 화성군 동 탄면 청계리 128				
87	도림동	358-3	도					김영진 외1인	서울 강서구 화 곡동 376-1				
106	도림동	358-4	전					최경환	도림동 358				
92	도림동	358-5	전					최경환	도림동 358				
88	도림동	358-6	도					김영진 외1인	서울 강서구 화 곡동 376-1				
111	도림동	358-8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90	도림동	358-9	도					박봉선 외1인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122-1				
28	도림동	412-14	과					장영선 외3인	도림동 412-14	남동 농협	만수동 1014- 1	근저당권 임차권	
16	도림동	413-11	과					천정숙	남촌동 358-7	신한 은행	태평로 2가 120	근저당권	
19	도림동	413-12	과					김정환	남구 도화동 119-3				

용 지 조 서(대로3-21)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4	도림동	413-8	대					조남용	남구 연수동 270-1				미등기
22	도림동	413-9	대					권오운	도림동 413-9				
2	논현동	532-9	도					국					
64	도림동	617	도					국	건설부				
17	도림동	무지번											
3	논현동	산30-2	도					최일섭 외6인	논현동 315-1				
1	논현동	산30-3	임					류명숙	논현동 320				
4	논현동	산30-4	임					방문수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5-1 삼익아파트 1-306				
0	논현동	산31-1	임					류명숙	논현동 320				
34	도림동	산58-1	임					최병전	간석동 207-3	오춘자 외2인	종로 평창동 350-4	근저당권	
32	도림동	산59-12	임					박용현	만수동 1038 삼익아파트 101-404				
12	도림동	산59-14	임					고상모 외3인	연수구 선화동 402-3 상가주택 5층	한국 전력	강남구 삼성동 167	임차권	
27	도림동	산59-4	도					노정환	논현동 111				미등기
26	도림동	산59-5	임					노정환	논현동 111				미등기
25	도림동	산60-1	임					박호영	서울 동작구 대방동 11-83				
10	도림동	산60-2	도					박호영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25				
25	도림동	산60-3	임					박호영	서울 동작구 대방동 11-83				
5	도림동	산60-4	도					박호영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25				
14	도림동	산60-5	임					박호영	서울 동작구 대방동 11-83				
11	도림동	산60-6	임					이경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34-35				
7	도림동	산60-7	임					전용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34-35				
6	도림동	산60-8	임					이선의	남구 주안동 622-12 양지아파트 401호	백인분 외1인	서구 가정동 508-18	가처분	

용 지 조 서(대로3-21)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 권리 관계	
9	도림동	산60-9	임					오정호 외3인	등작구 본동482 유원강변아파트 102-1304	산곡2동 새마을 금고	산곡동 100- 36	근저당권 지상권	
8	도림동	산60-10	임					최은숙 외1인	서울 서초구 반 포동1-19 은방 울아파트30-301				
21	도림동	산61-1	임					박점동	경성부 노량진 정 25				미등기
18	도림동	산61-2	도					박점동	경성부 노량진 정 25				미등기
15	도림동	산63-2	도					강인성	논현동 333				
13	도림동	산67-5	임					정영진	구월동 1300-21				

용 지 조 서(대로3-23)

일련 번호	행정 구역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논현동	84-4	전						한용식	계양구 병방동 382 아주아파트 5-202	김삼남	연수구 선학 동 산43-1	근저당권	
2	논현동	84-2	묘						유영운	북구 부평동 70-5동아아파트 4-205				
3	논현동	산13	임						한기만 외13인	수산동 586				
4	논현동	58	전						한백철 외2인	수산 558				
5	논현동	530	도						국	건설부				
6	논현동	80-2	전						김봉렬	논현동 40				
7	논현동	80-1	전						대한주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8	논현동	56	대						안태환	간석동 75-6				
9	논현동	54	대						성시준	논현동 53-2				
10	논현동	53-1	전						윤덕진 외2인	남구 송의동 218-13				
11	논현동	53-3	전						윤덕진 외2인	남구 송의동 218-13				
12	논현동	52	전						조재철	구월동 1271-4				
13	논현동	34-17	전						최홍진	논현동 22-3				
14	논현동	34-16	답						이재황	논현동 38-4				
15	논현동	34-18	답						이범산	용현동 188-10				
16	논현동	34-19	답						최치현	중구 신흥동 3 가 6	남동 농협	만수동 1014- 1	근저당권	
17	논현동	34-15	과						이재황	논현동 38-4				
18	논현동	34-14	답						강필순 외1인	논현동 45				
19	논현동	34-7	답						장하순	인천 남구 논현 동 111				
20	논현동	34-1	전						이재황	논현동 38-4				
소 계														

용 지 조 서(대로3-23)

[illegible]

지 장 물 조 서(3-2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	실제이 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면.구	동.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1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413-11	농장이 창표				천정숙	남촌동 358-7				
2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산63-2	창고				강기성	논현정 333				
						화장실									
3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산61-1	개사육 장				박점동	경성부 노랑진 동 25				
4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413-8	우사				조남용	남구 연수동 270-1				
5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산60-2	가판대				박호영	서울 영등포구 노랑진동 25				
6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412-14	배나무 밭				장명선 외3인	도림동 412-14				
7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45-6	비닐하 우스				배영택	연수구 청학동 48블럭2롯데 동 부APT 101-907				
8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412-14	배나무 밭				장명선 외3인	도림동 412-14				
9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44-6	비닐하 우스				정돈시	남구 용현동 491-13				
						창고									
						개집									
10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42	비닐하 우스				최병진	간석동 207-3				
11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617	화장실				국	건설부				
12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617	가로등 점멸기				국	건설부				
13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54-1	비닐하 우스				이승덕 외6인	남구 용현동 627-78 한양APT 6-803				
14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55-3	창고				이승덕 외6인	중구 내동 14				
15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55-3	화장실				이승덕 외6인	중구 내동 14				
16	인천 광역시	남동	도림		314-3	비닐하 우스				유강	만수동 460-15				

